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1999. 11.  
제출자 : 사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 3. 주요골자

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안 제21조제3항제5호): 5년이내 분할납부(연8%)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2)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의 공장용지

나. 경작분 대부료율 조정(안 제22조제2항)

○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 :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현행 :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

다. 건축물의 대부료 산정(안 제25조제1·5·6호)

(1) 건축물 대부료 산정시 :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함(이 경우 부지 평가액은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포함)

(2) 지하건물 대부료 산정시 :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3)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 적용가능(이 경우 구체적 증빙서 제출)

라. 신탁업무 신설(안 제31조의2)

○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종류 :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

마. 매각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안 제38조의2제6항)

○ 매각대 전액 또는 일부감액 매각재산에 대하여 :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등을 하여 매각을 못하도록 함.

### 3.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100조의3

나. 지방자치법 제35조(시의회 의결사항)

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행정자치부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99. 10. 26 ~ 11. 14(20일간)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게재 및 게시공고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익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 까지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의”로 한다.

제19조의2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제1호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제16호”를 “및 제1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를 “기업의 사업 목적상”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 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동조 제7항 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을 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2제1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투법”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중 “수출 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 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 면적)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  
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  
에는 해당층의 총 면적)

3.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 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 제1항 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 제1호 중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제5항 제2호 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 중 “전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전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으로 하고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을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38조의2 제1항 제4호 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제4항 제1호 중 “외 · 투법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제4호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 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제1항 중 “시, 읍 · 면 · 동”을 “당해 시의”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유관 행정관서”로 한다.

제49조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준용) ①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②채권인 공용전세 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 제8항,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생략)</p> <p>② (생략)</p> <p><u>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의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u></p>
<p>④ ~ ⑤ (생략)</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u></p>	<p>2. &lt;삭제&gt;</p>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p>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lt;신설&gt;</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 제3항</p>
	<p>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처분재원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p> <p><u>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u></p> <p><u>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제7조 <삭제>
<p>제13조 (사용허가 조건) (생략)</p> <p>1. ~ 4. (생략)</p> <p><u>5. 손해보험증서 제출</u></p> <p>7. ~ 8. (생략)</p>	<p>제13조 (사용허가 조건)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lt;삭제&gt;</u></p> <p>7. ~ 8.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사용허가부)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14조 (사용허가부)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p> <p>-----</p>
<p>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 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16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생략) 1. ~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지역의</u> 공유재산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u>인정하는</u> ----- -----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① (생략) 1. ~ 4. (생략)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u>&lt;신설&gt;</u>	
<u>&lt;신설&gt;</u>	
② (생략)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생략) 3.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 ·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③ (생략)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 (현행과 같음) 1. ----- <u>제2호, 제6호</u> ----- 및 <u>제16호</u> -----

현 행	개 정 안
2. ~ 4. (생략) <u>&lt;신설&gt;</u>	2. ~ 4. (현행과 같음) <u>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 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 <u>기업의 사업목적상</u> ----- -----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u>사용요율</u> 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지의 목적과 취락개선 사업에 사용 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 <u>사용료의 요율</u> ----- ----- ----- ----- ----- ----- -----